

재난의료과 업무성과 및 향후 계획

□ 기구 개요

- (근거) 「자율기구 “재난의료과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(복지부훈령)
- (존속기한) '22. 12. 29. ~ '23. 12. 28.
- (기능) 재난의료 대응체계 구축,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·관리

□ 주요 성과

① 국가 재난의료 시스템 체계화

- 복지부 중심의 상시 다수사상자 사고 대응체계 구축
 - * PS-LTE 및 모바일상황실을 통한 재난의료과(과장 및 사무관·주무관 당번제) 24시간 모니터링, 재난의료 대응단계별 보고·대응체계 마련
 - 지자체 및 의료기관을 아우르는 재난의료 거버넌스 총괄 기능을 강화하여, 재난 양상에 따라 재난의료자원 효과적 동원* 기반 마련
 - * 특히, 중앙부처 조직을 통해 대응함으로써 단일 보건소·재난의료지원팀(DMAT)이나 특정 지역 내 병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고에 대한 자원동원 역량 강화
 - 국가행사(궐버리)·인파밀집사고(헬러원) 대응 복지부·중앙응급의료센터 비상근무조 편성 및 대응
 - * (사례) '23년 헬러원 대비 인파 안전관리대책 수립 시 범부처 계획 단계에 선제적으로 참여하고, 사전 지자체·재난거점병원 업무협의 및 사전경보 발령 등 조치
- 중앙-지역으로 이어지는 재난의료 정책 추진 기반 마련
 - (중앙) 국가 차원 재난의료 정책을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('23~'27)에 반영*하고,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개정 추진(~11월)
 - * 재난예방·초동대응·역량강화·정책기반 등 재난의료 정책 영역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여, 제3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대비 재난의료 내용 대폭 확대
 - (지역) 시·도별 재난의료협의체 구성 및 다수사상자 발생 시 조치계획 최초 수립(10월)
 - * 내부 보고기준 수립, 다중인파사고 대응계획, 특수재난 유형별 대응체계 등 포함

○ 재난 일선의 의료 대응역량 강화

- 안정적 DMAT 인력 및 신속한 출동기반 확보를 위하여 DMAT 출동수당 인상('23) 및 대기수당 신설('24 예산안 반영), 단체보험 가입 추진(보험사 공모 중)
- 재난 현장출동 시 신속대응할 수 있도록 전국 보건소장 및 DMAT 요원 교육('23.5월~8월) 실시

② 필수의료대책 일환으로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 추진

- 구급 현장에서 적절한 응급의료로 연계되도록 병원의 중증도 분류 기준에 상응하는 구급현장(병원 전) 기준 개발('24년 시행)
 - * 현재 구급대의 분류기준은 대원의 경험 및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으며, 병원 기준(KTAS)과도 상이하여 적정·신속한 이송에 한계
- 전용헬기·전담구급차 확충 및 현장 응급의료 제공자 역량 강화 (응급구조사 업무범위 14종 → 19종으로 확대) 등 현장 이송 인프라 강화
 - * (전용헬기) '24년 1대 추가(8 → 9대) 예산 정부안 반영
 - ** (전담구급차) 중증 환자 전원이송 중 상태악화 방지 및 생존률 제고를 위해 중환자실 장비가 구비된 전용구급차(MICU) 도입('24년 신규 1대 예산 정부안 반영)
- 사설구급차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민간 구급차 제도개선 협의체 최초 구성('23.10.30. 킥오프 회의)
 - * 민간 응급환자 이송체계 서비스 질 제고 방안 및 이송처치료 현실화 등 논의

□ 향후 계획

- (재난의료 대응체계)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개정 완료(11월) 및 재난의료 전달체계 중장기 개편방향 검토
- (응급환자 이송체계) 민간 구급차 이송처치료 및 서비스 질 제고* 방안 마련, 중증응급환자 전담 이송 인프라 확충('24년 MICU** 시범사업, '27년까지 닥터헬기 12대) 등 이송 기반 마련
 - * 이송 서비스 품질 평가체계 구축 및 인증제 도입('24년 시범사업) 등
 - ** 응급의학전문의 등이 탑승하고 중환자실(ICU)과 동일한 환경을 갖춘 구급차

의료보장혁신과 업무성과 및 향후 계획

□ 기구 개요

- (근거) 「자율기구 “의료보장혁신과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 (복지부훈령)
- (존속기한) '22. 12. 29. ~ '23. 12. 28.
- (기능) 지출 효율화 관리, 비급여의 급여화 재점검, 근거창출급여 운영 등

□ 주요 성과

○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관리

- 적정 건강보험 혜택은 유지하되 불필요한 지출은 재점검하여 필수의료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「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」 후속조치 관리

<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4대 분야 별 주요 추진 사항>

의료공급	• MRI·초음파 급여기준 개선 고시 개정(23.06) • 약제 급여적정성 평가(지속) 및 기준요건 재평가(~'23.12) • 요양병원 환자 분류 체계 개선 연구용역 착수('23.7) •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('23.6) 및 적정성 평가 결과 하위 기관 대상 가산 수가 지급 제한('23.7~12)
자격관리	• 외국인 피부양자 요건 강화(기존: 입국직후 → 개선: 6개월 후, 상임위 계류 중) • 요양기관 자격 확인 의무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('23.5, 공포 1년 후 시행)
의료이용	• 과다 의료이용자 등록·관리 등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('22.11) 및 모니터링(지속), 맞춤형 중재 신설('23.4) • 본인부담상한제 소득 상위 30%^{5~7} 구간 상한액 인상 관련 시행령 개정('23.6)
재정관리	• 재정 지킴이 신고센터 구축 운영('22.12~) • 불법 개설 의료기관 부당이득 환수 기간 단축 관련 시행령 개정('23.6) • 고액상습 체납자 신상 공개 관련 시행령 개정('23.6)

○ 비급여의 급여화 재점검

- 既 급여화된 초음파·MRI 중 재정목표 대비 초과 지출 항목 등 의료 남용 의심 항목 중심으로 급여기준 명확화 및 개선



급여기준개선협의체 회의(2.27.)



언론 보도(한국일보, 7.17.)

○ 근거 창출 급여(선별급여) 운영

(선별급여란) ▲불확실한 비용·치료 효과성으로 추가 근거 축적 필요, ▲경제성은 낮으나 잠재적 건강 이득이 예상되는 의료기술 대상으로, 통상적 비율^{5~20%}보다 높은 본인 부담률 50%, 80%, 90%을 적용한 급여 제도

- 재정누수 최소화와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선별급여 관리체계 정상화 추진
* '23년 6월 기준 약 424.7억 원 보험자 부담금 절감
- 보장성 강화 명목 제도를 근거 중심의 급여 구매 결정 기전으로 개편하기 위한 혁신계정 및 선별급여 제도 중장기 개편 추진 방향 도출
* 새로운 지불제도 개발을 위한 거버넌스 마련(혁신계정), 울산대, 23.9~
** 선별급여 제도 개선 방안(심평원, 서울대 '23.4~) 및 제도영향평가(심평원, 울산대 '23.5~)

○ 국립대 병원 등 거점기관의 획기적 역할·역량 강화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중추 확립 정책방향 수립 및 추진계획안 마련



생명권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전략 회의(10.19, 대통령 주재)

□ 향후 계획

-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관리, 비급여의 급여화 재점검 관련 정책 추진 방향은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담아 정책 연속성 확보
 - 근거 기반의 급여 지불제도 도입을 위한 혁신계정 및 선별급여 중장기 제도 개편 지속 추진
-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등 필수의료혁신전략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필수의료 지원 패키지 마련